

“유령筆者”에 의한 代作—저작자 사칭죄의 波長

韓勝憲

변호사 · 한국저작권연구소 소장

시군! 지난번 장마에 별 피해는 없었는지 궁금하네. 나는 그동안 저작권에 관계되는 연구용역을 해내느라고 한참 고생을 했다네.

오늘은 자네에게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 주겠네. 젊은 출판인으로서 꿈을 가꾸는 자네에게 참고가 되면 다행이겠네.

몇년 전 이야기는데, 어떤 월간지의 부탁으로 저작권에 관한 글을 써넘겼더니 어휘나 문장이 어찌나 ‘성형수술’을 당했는지 아주 낯선 모습이 되어버렸더군.

그때 ‘표절’과 ‘도용’이란 말을 ‘훔쳐먹기’나 ‘빼껴먹기’니 하는 식으로 바꿔놓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

표현이야 어떻든 표절이나 도용은 문화적인 절도행위임에 틀림이 없고, 나아가서 저작권법 위반의 대표적인 몰골이라고 말할 수 있지.

표절은 영어로 Plagiarism, 독일어로 Plagiat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법에서 ‘어린이나 노예나 자유인을 훔친다’는 뜻을 가진 Plagium이란 단어에서 연유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희랍어의 Plagios 즉 ‘근성이 나쁜 사람’이란 말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하네.

남이 쓴 글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쓴 것인양 가장하는 것은 윤리적 · 도덕적인 면에서 파렴치할 뿐더러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표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평가하자면 글을 쓴 필자가 자기 글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편으로 그 글의 출판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도 가로챈 셈이니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셈이지. 그런 행위는 저작권법 제98조(권리의 침해죄)에 의하여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네.

그뿐만이 아니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實名, 異名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로서 ‘저작자 사칭죄’에 걸릴 위험도 있다네.

그런데 글 쓴 사람과 서로 합의하여 필자를 딴 사람 이름으로 공표하면 어떻게 될까.

예로부터 代作이라는 것이 있어서 남의 이름으로 나가는 글을 대신 써주는 예가 더러 있는 모양인데, 이럴 때에는 대작을 하는 사람의 동의가 선행되는 것이니까 앞서처럼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또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인지 代作의 풍조는 상당히 번지고 있는 것 같네. 특히 政界나 財界의 유명인사 또는 연예계나 스포츠계의 ‘스타’들은 글을 쓸 경황도(때로는 역량도?) 없을 터인데, 그럴 듯한 책을 버젓이 내놓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들 중에는 더러 누구를 시켜서 글을 쓰게 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출판을 한다고도 하네. 이와 같은 대작자를 Ghost Writer(유령 필자?)라고 부른다네.

시군,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삼총사」 등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뒤마라는 프랑스의 작가

를 아시지? 그분은 생전에 도합 1,200편이나 되는 작품을 썼다는데, 66세의 생애로 어떻게 그 많은 작품을 쓸 수 있었느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네. 실인즉 그는 많은 대작자, 즉 유령필자를 두었더라고 전해지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수가 조교나 제자를 시켜서 자기 글을 쓰게 한다든지, 몇 개의 연재를 동시에 맡고 있는 작가가 대작을 시키는 일이 내밀하게 벤발하고 있다네. 그런 일쯤은 으레 있을 수 있는 편법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법적으로는 그게 심상치가 않다 이 말일세. 조금 전에 말한 ‘저작자 사칭죄’에 걸리지 않겠느냐는 문제 말이지.

대작자와의 계약 또는 그밖의 합의에 의한 일이라니 표절의 경우처럼 저작자 인격권(그 중에서 성명표시권) 및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앞서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자 사칭죄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일본의 옛날 대심원 판결에서는, 저작자 사칭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놓고 친반양론이 들끓었었다네.

내 생각으로는 실제로 글을 쓴 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저작자 사칭죄의 책임은 면 할 수 없다고 보네. 그 이유인즉, 첫째 남의 글

을 자기 글처럼 표절을 하거나 무단으로 명의만 바꾸는 것은 앞서 말한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와 제2호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제99조(부정발행 등의 죄)의 제1호에 저작자 사칭죄를 따로 규정해놓은 점, 둘째 위의 사칭죄 조항을 보면 실제 저작자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는 점, 세째 따라서 사칭죄는 대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신용 또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지.

뿐만 아니라 네째 저작권법상의 대부분의 범죄가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저작자 사칭죄는 비친고죄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네(저작권법 제102조). 결국 대작자의 권리보호를 떠나서 저작물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와 신뢰, 즉 부실하거나 속임수가 낀 저작물로부터 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입법취지에서 사칭죄가 생겨났다고 보아야 옳을 것 같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한 소송이 벌어지고 뒤이어 판결이 나오면 좀 더 분명해지겠지만, 어쨌든 저자 이름만 그럴듯하게 바꾸어 붙이는 출판행위는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대학교제를 비롯한 교과서류에도 편의에 따라서 대작은 물론이고 같은 책을 놓고 저자 이름만 바꿔놓는 일이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저작자 사칭죄는 의외로 출판사측에 불똥이 튀기 쉽지. 번역자도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인 만큼 번역출판에 있어서도 실제 번역자 아닌 사람을 번역자인양 표시하면 똑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니 조심해야지.

재미없는 얘기가 되어서 미안하네. 건투하개나.



월刊 실내정식

영업부 : 266 - 0509

■ 무려 581개의
유사 어휘항목
■ 어원항목
547개

■ 지금까지 모든
VOCABULARY
교재에 수록되었던
어휘항목 종망라
■ 각 단어마다
예문적용
■ 암기→활용
→연습식 학습방법
소영미 역음

CONTEMPO
RARY
VOCABULARY
창지사
735-3858 • 739-7704
46倍版 · 값 9,500원 · 874면

정태혁교수의 종교에세이
여래와 여호와

불교와 기독교 같은점, 다른점

요즈음, 예수의 청년시절 행적에 대해 논란이 많다. 서구에서는 이미 백여년 전부터 있었던 논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교와 기독교의 사이에 너무도 많은 유사점과 다른 점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봇다와 그리스도의 말씀 속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 아닌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
• 신국판/320면/값 3,000원

대원정사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754-1613, 1614

조계종 종정 성철 큰스님 법어집
自己를 바로봅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 신국판/276면/값 3,800원

해인출판사
대구시 중구 삼덕동 2 가 40-2 ☎ 45-2517